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22-434호

서울~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(변경), 지형도면(변경), 토지세목(변경) 고시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163호(2004.07.02), 제2005-65호(2005.03.26), 제2005-106호(2005.05.13.), 제2005-176호(2005.06.28), 제2006-235호(2006.07.04), 제2007-96호(2007.03.23), 제2007-250호(2007.07.02.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161호(2008.05.23), 제2008-457호(2008.08.12.), 제2009-29호(2009.01.21.), 제2009-108호(2009.03.10), 제2009-398호(2009.06.24), 제2009-544호(2009.08.11), 제2012-53호(2012.02.14), 제2012-775호(2012.11.15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573호(2015.08.12.), 제2018-122호(2018.02.27.), 제2019-542호(2019.10.08.), 제2019-1001호(2020.01.03.), 제2020-526호(2020.07.24.), 제2020-964호(2020.12.18.), 제2021-995호(2021.08.03.), 제2021-1120호(2021.09.29.), 제2021-1319호(2021.12.08.)로 고시된 「서울~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」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, 「도로법」 제2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 번호	④ 노선명	⑤ 위치	⑥ 면적	⑦ 기점	⑧ 종점	⑨ 주요 통과지	⑩ 총연장 (km)
당초	고속국도	제60호	서울~춘천 고속도로	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~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	4,950,608	서울 특별시 강동구 하일동	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	-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- 경기도 하남시 선동, 망월동, 미사동 -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와부읍 덕소리, 월문리, 화도읍 녹촌리, 차산리, 창현리, 금남리 -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, 수입리, 노문리 -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, 천안리, 엄소리, 신천리, 창의리, 송산리, 미사리 -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-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, 추곡리, 행촌리 - 남산면 광관리 - 동산면 군자리, 조양리	61.41
변경					4,953,295 (증 2,687)				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선동교차로 형식개선(연결로 선형변경)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
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2022년 6월 ~ 2023년 6월 30일

4. 사업시행자 : 하남시장

5. 사업시행자 주소 :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(신장동)

6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: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남시청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
- 하남시청 건설과
 -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(신장동) ☎ 031-790-5037
 -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
 -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☎ 02-2110-6836
7.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내용 : 해당없음
8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: 해당없음
9. 지형도면 고시(변경) 내용

구분	종류	노선명	구간	연장(km)	지형도면 변경 고시 이유	비고
변경	고속국도	서울~춘천 고속도로 제60호	경기도 하남시 선동 266-2 일원	-	선동교차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에 따른 고시	면적 2,687㎡

10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 - ※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,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.
11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(㎡)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당초	변경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하남시 선동	266-2	제	1,324	1,168	1,324	국	국토교통부				
2		266-6	제	1,126	332	808	국	국토교통부				
3		268-5	도	695	-	230	국	국토교통부				
4		268-4	제	63	31	63	국	국토교통부				
5		270-11	도	458	-	21	국	국토교통부				
6		270-8	도	14	-	14	공	경기도				
7		268-3	도	112	14	82	국	국토교통부				
8		268-2	도	69	8	69	국	국토교통부				
9		271-2	도	93	-	61	국	국토교통부				
10		407	도	744	-	57	국	국토교통부				
11		405	도	72	72	72	국	국토교통부				
12		271-3	도	201	-	198	국	국토교통부				
13		272-4	도	26	-	1	국	국토교통부				
14		271-4	도	57	-	41	국	국토교통부				
15		272-1	잡	7,352	-	1	국	국토교통부				
16		271-1	전	2,807	-	4	국	국토교통부				
17		203-3	도	2,355	2,800	1,920	국	국토교통부				
18		276-2	전	81	-	11	국	국토교통부				
19		202	도	5,659	5,017	5,224	국	국토교통부				
20		273	과	16,723	-	46	국	국토교통부				
21		276	도	15,002	10,832	11,793	국	국토교통부				